

「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명희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·예술·체육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적용범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주최자의 준수사항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공연법 시행령」 등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부서검토: 안전재난과
- 기 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, 문화·예술·체육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령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「공연법 시행령」에 따른 지역축제 및 공연 이외의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례로 판단됨.
-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야외행사별 법령 적용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행사에 대한 상세 내역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